UPOV 이해와 품종사용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성열

목차

1 UPOV 이해
2 국내의 종자산업
3 품종보호 요건
4 품종이용

1 UPOV

유래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간 기구로서 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관장

-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égétales*
-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1 UPOV

설립목적

- 왜 인간은 살아가면서 종자개량을 하는가?
- 재배종 (병해충/질적특성/양적특성)과 자생종 다른 점은?
- 그렇다면 종자보호 장치가 없다면 누가 종자개량을 할 것인가?

- 1961년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
- 1991년 육성자의 권리강화, 보호대상작물의 확대 등

F1(품종)
F2(F1 종자):F1≒F2
F3(F2 종자):F2 ≒F3 ≒F1
.
.
.

버섯은? 포자 · 균사 · 균사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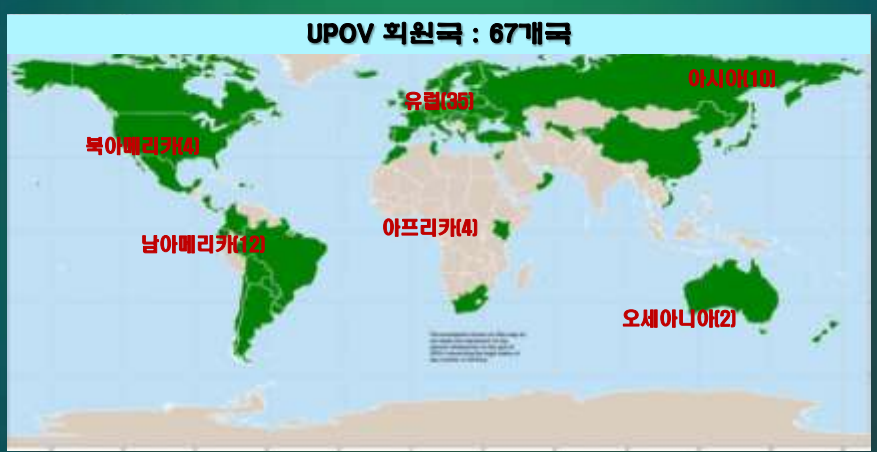
주요임무

- 회원국(가입국) 정부간의 협력증진
- 식물신품종보호법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을 지원
- 품종요건의 심사기준 확립으로 회원국의 품종심사지원

- UPOV 본부: 스위스(제네바)/채소기술분과 위원회(버섯)

1 UPOV

가입국



국내 품종보호

-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특허: 기술적 창작인 원천 핵심기술
    - 실용신안: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개량기술
    - 디자인: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모양
    - 상표: 타상품과 식별 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 저 작 권
    - 저작권: 문학,학술, 예술 분야 창작물
    - 저작인접권: 사업자의 복제권
  - 신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저작권: 반도체,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타베이스
    -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2 국내의 종자산업

국내 종자산업

- 1995. 5 제정 팀 구성(농림부)
- 1995. 12. 6 제정공포
- 1997. 12. 31 법 시행
- 2002. 1. 7 UPOV 회원 가입

- 세계무역기구와 지적재산권 협정 이행의무
- 종자산업발전을 위한 관련제도 도입
- 국내 관련법의 일원화

국내 품종보호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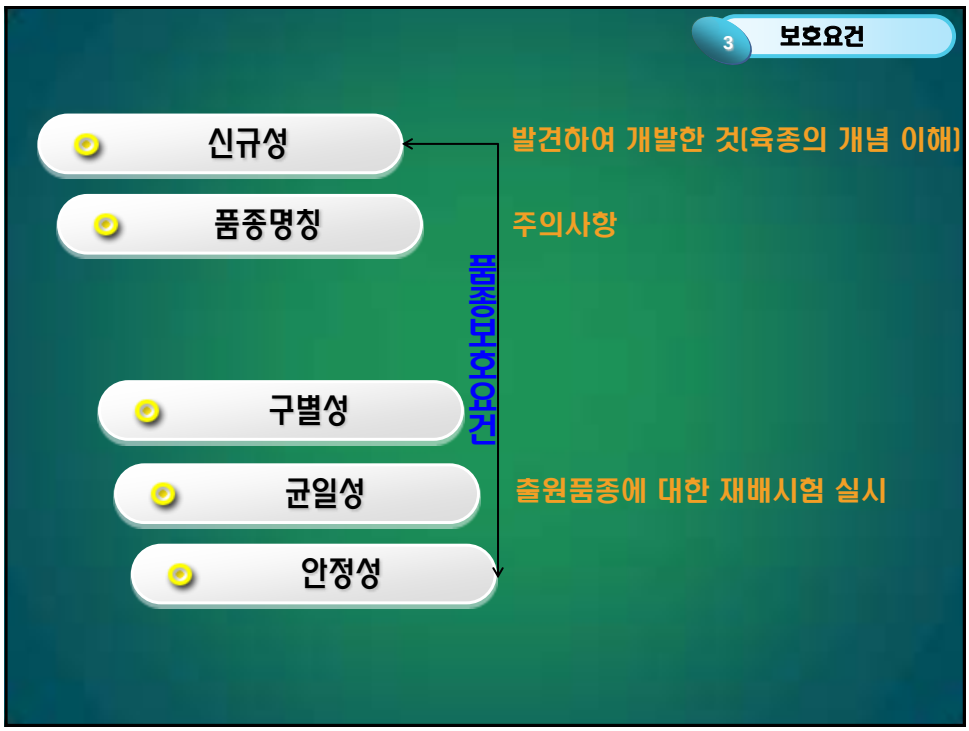
- 종자육성 · 증식 · 생산 · 조제 · 양도 · 대여 · 수출 · 수입 · 전시(종자산업)
-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 버섯 종균 또는 영양체(종자)
- 한가지 이상의 특성(유전형질)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됨(품종)
  - 식물학상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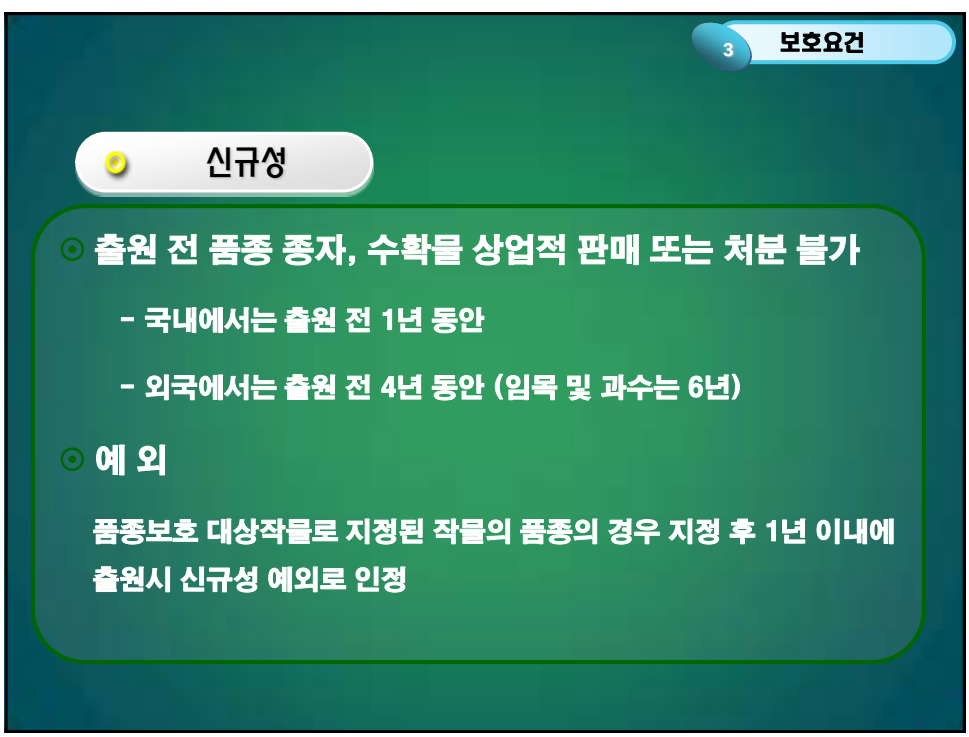
- 신품종을 육성한자 또는 발견하여 개발한 자(육성자)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품종보호권)
-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품종보호권자)
-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품종(보호품종)
- 보호품종 종자를 증식 · 생산 · 조제 · 양도 · 대여 · 수출입 · 양도 행위(실시)

2 국내의 종자산업

품종보호 출원처리




3 보호요건
신규성
품종명칭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재배시험요건
발견하여 개발한 것(육종의 개념 이해)
주의사항
출원품종에 대한 재배시험 실시


3 보호요건
신규성
◎ 출원 전 품종 종자, 수확물 상업적 판매 또는 처분 불가
- 국내에서는 출원 전 1년 동안
- 외국에서는 출원 전 4년 동안 (임목 및 과수는 6년)
◎ 예 외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된 작물의 품종의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에 출원시 신규성 예외로 인정

품종명칭

-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
  -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 품종의 종자를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 국제적으로 1품종 1명칭 사용원칙
- 품종명칭등록이 안 되는 경우
  1.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2. 품종 및 수확물의 산지, 품질, 수확량, 가격, 용도, 생산시기,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명칭
  3. 작물명, 속 또는 종명 사용, 작물명,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 또는 혼동우려
  4.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5. 당해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등

구별성

- 출원서 제출시 일반인에게 알려진 다른 품종과 분명하게 구별필요
- 알려진 품종
  - 유통되고 있는 품종, 보호품종,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 농림부령이 정하는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균일성

- 번식 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해 관련특성이 균일해야함

- 관련특성
  -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검정에 이용된 모든 특성 포함
  - 당해 품종의 특성기술에 포함된 특성

- 판단방법
  - 영양번식 및 자화수분품종 : 이형주(off-type)의 숫자
  - 타화수분 품종 :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판단



안정성

- 반복 번식 후(번식주기 고려) 관련특성이 변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필수적인 특성이 안정적이어야 함

- 판단방법
  제출된 표본이 연차간에 균일하게 나타나면 가능 (1대 잡종품종의 경우 양친 및 1대 잡종품종 자체를 추가하여 균일성과 안정성 검정)



품종보호권자가 아니라면

- 품종생산판매신고(국내 품종유통)

- 품종수입판매신고(국외 품종유통)
  - 수입적응성시험(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
  - 종자수입요건신청(관세청 통관포털)
  - 종자수입요건확인(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4 품종의 이용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0.9.1>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 생산 · 수입판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 소		
	④법인명칭		⑤전 화 번 호
대 리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전 화 번 호
육 성 자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⑫주 소		⑬전 화 번 호
⑭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Lentinula edodes* (Berk.) Pegler	
⑮품종의 명칭			
(16)품종육성과정의 설명		(별지사용)	
(17)품종의 특성설명		(별지사용)	
(18) 종자업 등록번호			

종자산업법 제1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 생산 · 수입판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수수료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0.9.1>

접수인란		결재인란	

수입적응성시험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대 표 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 주 소		
	④ 법 인 명 칭	⑤ 전 화 번 호	
내용	⑥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⑦ 품종의 명칭		
	⑧ 육 성 자 의 성 명		
	⑨ 품종의 주요특성		
	⑩재배요령 및 유의사항		

「종자산업법」 제1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른 농림귀하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세관통관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비서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1부	수수료 원

4 품종의 이용

「종자산업법」 제1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산 림 청 장 귀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른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

구비서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1부	수수료 원

2010년도 표고버섯 수입적응성 시험

1. 시험목적
2. 시험기간 및 장소
3. 시험책임자 및 시험자
4. 시험품종
5. 접종시기
6. 시험방법 “신품종심사를 위한 표고버섯 특성조사요령(TG)-2008. 6. 산림청제정”
7. 접종량
8. 수확시기

- **종자산업법 제1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종자의 생산 연도, 포장연월, 종자의 접종일과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



품질표시	
버섯종류	?
품종명칭	?
배양완료일	? ? ?
검사자	? 종균배양

4 품종의 이용



구체적인 품질표시



예) 일본 종균_품질표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21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1. 품종의 명칭
2. 종균의 무게
3. 종균 접종일
4.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
5. 재배시 특히 주의할 사항
6. 종자업 등록번호
7.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8. 품종생산 · 수입판매 신고번호
9. 유전자변형종자표시(유전자변형종자)





4 품종의 이용

- 무등록 종균업자(법 제137조 제1항 위반)
-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 수입(법 제141조 제1항 위반)
- 생산수입판매신고 미필종자 판매(법 제138조 제3항 위반)
- 불량종균 유통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3조)

위반행위	부과금액(회수별)				
	1회	2회	3회	4회	5회
품질표시 미이행(법 제143조)	100	300	500	700	1,000
품종명칭 미등록(법 제112조 제2항)	300	400	500	700	1,000
조사, 종자수거 거부 및 방해(법 제145조)	100	300	500	700	1,000



산림7호
산림9호
가을향
산조108호
산조702호
출원-21품종(2010.2)

4 품종의 이용

알려진 품종

- 산림1호, 산림2호, 산림3호, 산림4호
- 산조302호, 산조502호
- 삼290호, 균흥690호
- 7401호, CR04

품종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알려진 품종은 생산판매신고를 하고 사용







산림식물 품종보호로 녹색성장 산림자원창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http://www.kfsv.go.kr/